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선배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 3.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4. 주요내용

-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함. (안 제4조)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수를 위해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sup>1)</sup>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지금까지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관계로 행안부에서 인수지원단의 구성·운영의 방향과 단체장직 인수준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간략히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메뉴얼’을 만들어 제공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선인이 원할 경우 인수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왔음.
- 그러나, 올해 1월 12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또한 설치 시,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인수위원회의 주요 기능

- 당선인 측과 연락체계 구축, 취임 및 인수준비 협의, 새로운 지방정부의 목표·방침·역점시책 등 확정, 각종 현황 및 요청자료 제공, 주요 업무계획 보고, 취임행사 및 홍보대책 총괄, 사무인계·인수 준비, 주요 기관 및 현장방문계획 수립·안내, 공관 및 집무실 정비 등

## 나. 주요내용 검토

1) 인수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그 당선인이 취임하기 이전까지 존재하는 차기 단체장 또는 단체장당선인이 차기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임시조직으로, 새로운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발과 안정을 돕는 기능을 담당함.

- **안 제4조**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시행 '22.1.13.) 제10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본 조항은 「지방자치법」(시행 '22.1.13.) 제105조제5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 **안 제8조**는,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 소속 직원을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시행 '22.1.13.) 제105조제4항에 따른 인수위원회의 업무인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인수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분과 및 소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회의 소집의 경우, 단기간 운영되는 인수위원회 특성 상, 기존 위원회와 달리 필요시 소집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의 지원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예산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또한 위원들이 명예직이기는 하나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함.
  
-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법」(시행 '22.1.13.) 제10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12조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한 것으로,
  -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활동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안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근거로 작성된 바, 부칙에 시행시기를 2022년 1월13일부터로 규정함.

####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 '22.1.13.)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